



#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평가기준



2020. 11.

광주고등법원 총무과

# 목 차

## 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1. 용역참여 신청 및 접수처
2. 평가서 작성방법
3. 평가항목 및 배점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5.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6. 구비서류 명세

## II. 구비서류 양식

# 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 1. 용역참여 신청 및 접수처

가. 용역참여 신청 및 평가서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광주고등법원 총무과(062-239-1178)

## 2.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명세

- (1) 용역 참여 신청서 1부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나. 서류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 (나) 재 질 : 백상지(80g/m<sup>2</sup>)
  - (다)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 (라) 제본방법 : 상철 하여 제본할 것
  - (마) 용역참여신청서 제본순서
    - 1) 평가서 표지 (양식 1)
    -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2)
    - 3) 용역관련등록증 사본
    -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
    - 5) 공동수급협정서
    - 6) 평가항목 및 배점 (양식 4)
    - 7) 자기평가서 (양식 5)
    -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 6)
    - 9)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 10) 참여기술인의 해당(직무)분야 경력사항 (양식 7)
    -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3)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등 (양식 8)
- 1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관련 확인서 사본
- 16)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 관련 확인서 사본
- 1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9)
- 18) 유사용역 수행 실적확인서
- 19) 업무정지 및 부정당사업자 지정기간 (양식 10)
- 20) 별점 관련사항 (양식 11)
- 21) 제재현황 및 별점 관련 확인서 사본
- 22) 신용평가등급 (양식 12)
-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3)
- 25) 신기술지정증서 및 신기술, 특허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 26) 투자실적 관련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27) 교체빈도 (양식 14)
- 2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 15)
- 29) 가점 및 감점 관련사항
- 3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양식 16)
- 31) 서약서 (양식 17)
- 32)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배치표 (양식 18)
- 33) 자기평가서(신인도 항목) (양식 19)

※ 위 관련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도 제출 가능(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행분에 한함)하며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후 각 협회 또는 발주처가 발행한 서류원본을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각 회사 대표자(사용인감)가 원본과 같음을 확인한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처리 한다.

(나)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

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상호 모순된 사항 및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 등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다. 평가기준일 등

- (1)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해당기술인 착수일로 한다.
- (2)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라. 건축분야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점 비율

건축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직무분야의 점수 계산 시 배점 비율은 아래와 같음.

건축1 : 0.368      건축2 : 0.294      기계 : 0.338

#### 마. 면접점수

- (1) 평가서 작성 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점수는 0점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배점기준

- (1) 평가기준은 광주고등법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3020호, 2020.04.17.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용)이 적용됩니다.
-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건축분야만 해당)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자기평가서상의 P. Q 점수가 100점 이상인 업체가 평가 오류로 100점 미만인 경우는 실격처리 하되 100점 이상인 경우는 실격처리 하지 않음.

### 3. 평가항목 및 배점

#### < 총괄표 >

구분	해당 분야별 평가점수	분담율	환산점수	비고
건축분야		0.716		
전기·통신분야		0.284		
합계		1.000		

※ P. Q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입니다.

#### < 집계표 >

구분	대분류	배점	평가점수
건축분야	1. 참여 기술인	6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3. 신용도	1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5. 교체빈도	5	
	6. 가감점		
	계	100	점
전기·통신분야	1. 참여 기술인	6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3. 신용도	1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5. 교체빈도	5	
	6. 감점		
	계	100	점

< 배 점 표 > (건축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방법	배 점		비 고
				계	세부	
1. 참여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 접	실격여부 절대평가 〃 〃 상대평가	25	- 13 9 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 육 훈 련 면 접	실격여부 절대평가 〃 〃 상대평가	25	- 14 9 1 1	
	기술지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실격여부 〃 〃 〃	10	- 6 3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용역수행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 실적	절대평가	10	10	
3. 신 용 도	계			15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 인	절대평가	7	7	
	별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 인	절대평가	5	5	
	재정상태건설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3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투 자 실 적	건설신기술, 특히 최근 3년 투자실적 평균	절대평가 〃	10	3 7	
5.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자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절대평가 〃	5	3 2	

< 배 점 표 > (전기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방법	배 점		비 고
				계	세부	
1. 참여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책임감리원)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 접	실격여부 절대평가 〃 〃 상대평가	35	- 19 13 1 2	건축점수 적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통신보조감리원)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 육 훈 련 면 접	실격여부 절대평가 〃 〃 상대평가	15	- 8 5 1 1	건축점수 적용
	기술지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등 급 해 당 경 력 직 무 실 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실격여부 〃 〃 〃	10	- 6 3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건축점수 적용
	용역수행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 실적	절대평가	10	10	
3. 신 용 도	계			15		건축점수 적용
	업무정지	용역사업자/참여기술 인	절대평가	7	7	
	별점	용역사업자/참여기술 인	절대평가	5	5	
	재정상태건설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3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투 자 실 적	건설신기술, 특히 최근3년 투자실적평균	절대평가 〃	10	3 7	건축점수 적용
5.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절대평가 〃	5	3 2	

####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음영부분 해당)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등급	건축분야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1) 건축분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2) 전기분야(상주책임감리원) 상주감리경력 1년 이상인 특급감리원 이상(「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3에 의함.)						
		전기분야 [35]							
(나) 해당분야 경력	(가)등급	건축분야 (13)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전기분야 (19)	해당공사규모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건축)	13	11.5	10	8.5	7		
		점수(전기)	19	17.3	15.6	13.9	12.2		
(다) 직무분야 실적	(가)등급	건축분야 (9)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전기분야 (13)	해당공사규모	3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300억원 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건축)	9	8.1	7.2	6.3	5.4		
		점수(전기)	13	11.7	10.4	9.1	7.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라)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li> <li>○ 전기는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른 교육, 통신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li> </ul>															
	1) 교육훈련 (0.5점)			교육훈련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		0.5	0.3											
	2) 기술자격 (0.5점)																	
				자 격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2)			점 수		0.5	0.3	0.1										
	(라) 면접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건축분야</li> <li>-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data-bbox="432 1267 671 1346"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 data-bbox="671 1267 1437 1346">용역비</th> </tr> <tr> <th data-bbox="671 1346 927 1451">20억원 미만</th> <th data-bbox="927 1346 1182 1451">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h> <th data-bbox="1182 1346 1437 1451">30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2 1451 671 1547">업무수행능력</td> <td data-bbox="671 1451 927 1547">2점</td> <td data-bbox="927 1451 1182 1547">3점</td> <td data-bbox="1182 1451 1437 1547">4점</td> </tr> </tbody> </table>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2점	3점	4점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2점	3점	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점 기 준						
가. 참여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등급	건축분야 [25] 전기분야 [15] (-)	*. 평가 대상 인원 1) 건축분야 : 3명 (건축1, 건축2, 기계) 2) 전기분야(상주보조감리원) : 통신 1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 미만일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나) 해당분야 경력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건축)	14	12.5	11	9.5	8		
		점수(전기)	8	7.3	6.6	5.9	5.2		
		(다) 직무분야 실적	건축분야 (9) 전기분야 (5)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300억원 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건축)	9	8.1	7.2	6.3	5.4				
점수(전기)	5	4.5	4.0	3.5	3				
(라) 교육훈련	(1)	(1)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4,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 (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마) 면접 (발표)	(1)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건축 1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용역비					
		구 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업무수행능력		1점		1.5점		2점	

□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0]	*. 평가 대상 인원 1) 건축분야 : 책임 1명 2) 전기분야 : 책임 1명																																							
		(6)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나) 직무분야 실적	(3)	<table border="1"> <thead> <tr> <th>직무분야</th> <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점수</td> <td>3</td> <td>2.4</td> <td>1.8</td> <td>1.2</td> <td>0.6</td> </tr> </tbody> </table>						직무분야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직무분야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																																									
구분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	3	2.4	1.8	1.2	0.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p>○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p>○ 전기는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른 교육, 통신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p> <p>1) 교육훈련</p> <table border="1" data-bbox="435 633 1437 779"> <thead> <tr> <th>교육훈련</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0.5</td> <td>0.3</td> </tr> </tbody> </table> <p>2) 기술자격 (기술지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p> <table border="1" data-bbox="424 943 1449 1070"> <thead> <tr> <th>자 격</th> <th>기술사, 건축사</th> <th>기사</th> <th>산업기사</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0.5</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교육훈련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	0.5	0.3	자 격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 수	0.5	0.3	0.1
교육훈련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 수	0.5	0.3															
자 격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 수	0.5	0.3	0.1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10] (10)	<p>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시공, 검측감리실적 100% 인정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p> <p>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기술용역 (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250이상</td> <td>250미만 210이상</td> <td>210미만 170이상</td> <td>170미만 130이상</td> <td>130미만 90이상</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90이상</td> <td>190미만 160이상</td> <td>160미만 130이상</td> <td>130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70이상</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30이상</td> <td>130미만 110이상</td> <td>11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80이상</td> <td>80미만 65이상</td> <td>6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5이상</td> <td>35미만 20이상</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30이상</td> <td>3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0이상</td> <td>-</td> <td>-</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body> </table> <p>※ 해당 공사규모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p>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해당 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10	9	8	7	6																																								

□ 신용도,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 업무정지	[15] (7)	<p>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2) 별점	(5)	<p>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점 이상 2점 미만</td> <td>0.2</td> </tr> <tr> <td>2점 이상 5점 미만</td> <td>0.5</td> </tr> <tr> <td>5점 이상 10점 미만</td> <td>1</td> </tr> <tr> <td>10점 이상 15점 미만</td> <td>2</td> </tr> <tr> <td>15점 이상 20점 미만</td> <td>3</td> </tr> <tr> <td>20점 이상</td> <td>5</td> </tr> </table>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 재정상태 건설도	(3)	<p>1)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p> <p>&lt;신용평가등급 기준&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기준 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li> </ul> </li> <li>○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기준 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 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li> <li>- 기준 점수</li> </ul> <table border="1" data-bbox="446 1411 1436 1612">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1.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446 1691 1436 1982">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li></ul>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2) 투자실적	(7)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 미만</td>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20년 미만</td> </tr>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이상</td> <td>1.50%미만 1.25%이상</td> <td>1.25%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미만 0.50%이상</td> <td>0.5%미만</td> </tr>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able>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교체빈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율 (%)</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참여기술인	(2)													

##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 점	(1) 청년신규 기술인의 참여	[0.4]	<p>○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청년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비율(%)</td> <td>2%이상 3%미만</td> <td>3%이상 4%미만</td> <td>4%이상</td> </tr> <tr> <td>가산점수</td> <td>0.2점</td> <td>0.3점</td> <td>0.4점</td> </tr> </table> <p>※ 신규 청년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만34세 이하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p>	비율(%)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2점	0.3점	0.4점			
	비율(%)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2점	0.3점	0.4점											
(2)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p>○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 내 참여기술인이 제안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 기술인</p> <p>- 상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p> <p>&lt;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able> <p>*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인(평가대상)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사. 감 점	(1) 부패 행위 관련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li> <li>○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li> <li>-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li> </ul> </li> </ul> <p>&lt;부패행위&gt;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p>
	(2)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선정 전,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 중복배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ul> <p>※ 제10조 제4항</p> <p>④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당해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조달청은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p> <p>※ 위 사항의 평가는 인지·제보 등에 따라 우리처가 기술인 중복배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지한 날부터 2년간 적용한다.</p>

## 5.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 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나.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사.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아. 「소방시설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자.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2. 공동도급 허용범위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5개사 이내)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기술인수 (8명)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 6명(책임, 건축1, 건축2, 기계, 전기책임, 통신)과 기술지원책임기술인(건축, 전기 각 1명)으로 한다.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단, 비평가 대상인 토목상주기술자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배치계획표 및 안전관련 교육훈련 증빙자료를 간소화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상주기술인 중 전체 용역기간에 대해서 안전관리담당자(책임, 건축1, 토목 중 1

명)를 지정]해야하며, 토목 상주기술인이 안전관리담당자로 배치되면 추후 다른 상주기술인으로 변경 지정 가능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건축공사)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군 경력은 공병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하사관 경력 중 해당분야(건축공사)만 인정.

####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 1) 설계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설계업무로 기재된 경력 중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발주처 등에서 설계한 경력을 인정
- 2) 시공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시공, 감독, 검사, 시험, 현장대리인업무 등으로 기재된 경력 중 건설회사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 3) 감리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감리, 발주처의 감독, 검사, 시험업무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

#### 마.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방법

- 1)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무 및 해당분야별 공사감리, 설계감리, 감독,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설계, 시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인정함.(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발주기관의 검사업무 경력은 50%만 인정)

예시) ○○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 건축기술인 : 주공종이 건축공사인 공사의 수행기간

- 토목기술인 : 주공종이 건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수행기간

(건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 등)

- 기계·전기·통신·소방기술인 : 건축공사의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수행기간

(건축물, 공장 등)

\* 기타공사 : 상기 “예시” 에 준하여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사 공사로 구분한다.

2)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3) 군 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4) 주택공사 근무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공장 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서로 다른 직종의 자격증을 겸유한 기술인이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인정한 분야에 배치될 경우 전 경력을 평가하며, 자격증에 의한 타 분야 배치 시에는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 중 해당분야 실적이 명확히 표시된 경력만 인정한다.

예시) 건축 및 설비자격증을 보유하고, 감리협회에 등록된 직종이 건축인 경우

- 건축기술인으로 배치 시 : 전 경력 인정

- 설비기술인으로 배치 시 : 자격은 인정

실적은 자격증 소지이후 경력 중 설비분야 실적임이 명확할 경우에만 인정

7)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 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 견적, 현장대리인 ③ 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 설계, 감독 ⑤ 설계, 견적 ⑥ 시공, 공무 ⑦ 설계, 감리

8)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9)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

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11)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감사장, 이사장주택 외 7건 : 감리기간 '05. 2. 1. - '05. 12. 31. 등은 평가 제외

- 12) 타 현장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현장배치예정일 이전에 당해감리원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시공, 검측감리실적 100% 인정

※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 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건설사업관리비×{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 이면, 공고일 기준 최종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2. 3. 2. 부터 2014. 5. 1. 범위에서 인정

금액계상[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비×{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한다.
- 라.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5. 신용도

### 가.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사업자 지정기간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재정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

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7. 교체빈도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8. 공동도급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 Q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

-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청년신규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2년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고용인

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08. 6월	'08. 7월	'08. 8월	'08. 9월	'08. 10월	'08. 11월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1	102	100	10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09. 6월	'09. 7월	'09. 8월	'09. 9월	'09. 10월	'09. 11월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2	103	102	104	104	105	103	104	103	104	104	105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09. 6월	'09. 7월	'09. 8월	'09. 9월	'09. 10월	'09. 11월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0	0	2	1	0	1	1	0	1	1	1	0

\*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1+102+100+101+100+100+100+100+102+101)/12 = 100.5833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2+103+102+104+104+105+103+104+103+104+104+105)/12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인원

$$= 0+0+2+1+0+1+1+0+1+1+1+0 = 8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인 고용율

$$= 8/101 = 0.0792079..... = 7.9208\%$$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7.9208%(신규청년기술인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라. 다만,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인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5명 이상인 경우 0.3점, 3명~4명의 경우 0.2점으로 평가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가항 공공업무시설에 한하여 해당하며, 발주처장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만 인정함.

[별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6. 구비서류 명세

구분	항 목	작 성 지 칩	양 식	증 병 서 류
신청서	용역참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 : 광주고등법원장</li> <li>· 참조 : 총무과장</li> <li>· 제목 : 용역참여신청서</li> <li>· 용역회사 대표이사 날인</li> </ul> </li> <li>-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등록증 사본</li> </ul>	양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등기부 등본</li> <li>· 인감증명</li> <li>· 사용인감(필요 시)</li> </ul>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평가서	표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으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li> <li>- 주요 증빙자료 실적은 형광펜 체크</li> <li>-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li> </ul>	양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발행 기술인 경력 확인서</li> <li>○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확인서</li> </ul>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 황		양식 3	
	평가항목 및 배점		양식 4	
	자기평가서		양식 5	
	참여기술인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와 기술지원, 분야별, 등급별로 자격증, 경력,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 교육훈련, 기술자격, 부실공사 관련 자격정지 등의 처분 받은 내용 등 요약 작성</li> </ul>	양식 6 양식 7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 실적 요약</li> <li>- 용역사업의 범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CM협회 등록실적 용역에 한함</li> </ul>	양식 9	
신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사업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li> </ul> </li> </ul>	양식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전 업체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li> <li>·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벌점</li> </ul>	양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등급</li> </ul>	양식12	

구 분	항 목	작 성 지 침	양 식	증 빙 서 류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평가서	기술개발· 활용실적 및 투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지정증서, 신기술 및 특허</li> <li>•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및 건설 부문 총매출액</li> </ul>	양식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 제출</li> <li>·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li> </ul>
	교체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명시</li> </ul>	양식14	
	가점 및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및 감점 내용</li> </ul>	양식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li> </ul>
	업무중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술인의 현장배치 현황 명시</li> </ul>	양식16	
	서약서		양식17	
	평가·배치표		양식18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및 감점 내용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li> </ul>	양식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li> </ul>